

집합투자계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안내

- 대상 펀드 : 교보약사 파워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(채권)
- 변경 시행일 : 2009년 11월 25일 (수)

[집합투자계약]

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변경 (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조항 삭제에 따른 개정)
-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제33조(이익분배) 조항 신설

구분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Class Af 수익증권 가. ~ 나. (생략) 다. <u>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수익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u>	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(현행과 동일)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Class Af 수익증권 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<u>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</u>
제33조 (이익분배)	① ~ ② (생략) ③ <신설>	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
[부칙]	<신설>	<u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09년 [11]월 []일부터 시행한다.</u>

[투자설명서]

-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신설
-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(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, 운용규모 등) 개정
- 작성기준일 변경(2009.11.10)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등 개정
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변경(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조항 삭제에 따른 개정)

구분	정정전	정정후
[표지]연락처	(주소)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-4 교보증권빌딩 12층</u>	(주소) <u>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22층</u>
[표지]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:	<u>2009년 3월 31일</u>	<u>2009년 11월 10일</u>
[표지]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	<u>2009년 5월 3일</u>	<u>2009년 11월 20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'	<u>2009.05</u> 자본시장법 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[변경전 : 교보약사 파워코리아 채권 모두자신탁 1호, 변경후 : 교보약사 파워코리아	<u>2009.05.03.</u> 자본시장법 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[변경전 : 교보약사 파워코리아 채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, 변경후 : 교보

	<p>아 증권 모투자신탁 1호(채권)]</p> <p><신 설></p>	<p>약사 파워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(채권)]</p> <p>2009.11. -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신설 / -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(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, 운용규모 등) 개정 / 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변경 (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조항 삭제에 따른 개정) / - 작성기준일 변경(2009.11.10)에 따른 운용 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‘4. 집합투자업자’</p>	<p>주소 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-4 교보증권빌딩 12층</u></p>	<p>주소 : <u>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22층</u>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‘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’</p>	<p>기준일 : <u>2009.03.31</u> 현재</p> <p>성명 : 김현중 / 생년 : 1967 / 직위 : 부장 /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: <u>101개</u> / 다른 운용자산규모: <u>10,009억</u></p>	<p>기준일 : <u>2009.11.10</u> 현재</p> <p>성명 : 김현중 / 생년 : 1967 / 직위 : 부장 /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: <u>92개</u> / 다른 운용자산규모: <u>3,552억</u>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‘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’, ‘나.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구조’</p>	<p>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</p> <p>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</p> <p>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</p> <p>다. <u>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u></p> <p>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	<p>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</p> <p>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</p> <p>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</p> <p>다. <u>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</u></p> <p>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‘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’, ‘(2) 종류별 가입자격’</p>	<p>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</p> <p>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</p> <p>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</p> <p>다. <u>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u></p>	<p>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</p> <p>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</p> <p>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</p> <p>다. <u>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</u></p>

	<p>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	<p>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‘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’, ‘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’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p>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</p> <p>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</p> <p>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</p> <p>다. <u>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u></p> <p>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p>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</p> <p>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</p> <p>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</p> <p>다. <u>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</u></p> <p>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‘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’, ‘가. 이익 배분’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(매3개월)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(매3개월)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</p> <p>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
<p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中 ‘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’, ‘가. 회사개요’</p>	<p>주소 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-4 교보증권빌딩 12층</u></p> <p>자본금 : 300억원 (<u>2008.3월말 기준</u>)</p>	<p>주소 : <u>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22층</u></p> <p>자본금 : 300억원 (<u>2009.3월말 기준</u>)</p>
<p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中 ‘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’, ‘다.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’</p>	<p><u><정정전1></u></p>	<p><u><정정후1></u></p>
<p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中 ‘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</p>	<p><u><정정전2></u></p>	<p><u><정정후2></u></p>

항', '라. 운용자산규모'		
-----------------	--	--

정정전1)

요약 대차대조표			요약 손익계산서		
항 목	'08.03.31	'07.03.31	항 목	'08.03.31	'07.03.31
유동자산	49,688	51,075	영업수익	15,907	13,203
고정자산	6,588	4,164	영업비용	10,500	9,524
자산총계	56,276	55,239	영업이익	5,407	3,679
유동부채	1,175	2,049	영업외수익	54	3,212
고정부채	259	149	영업외비용	9	-
부채총계	1,434	2,199	경상이익	5,452	6,891
자본금	30,000	30,000	특별이익	-	-
이익잉여금자	24,842	23,040	특별손실	-	-
분조정금	-	-	세전순이익	5,452	6,891
자본총계	54,842	53,040	당기순이익	3,902	4,948

정정후1)

요약 대차대조표			요약 손익계산서		
항 목	'09.03.31	'08.03.31	항 목	'08.04.01~ '09.03.31	'07.04.01~ '08.03.31
현금및예치금	488	490	영업수익	166	159
유가증권	0	0	영업비용	118	105
대출채권	6	7	영업이익	48	54
유형자산	3	4	영업외수익	0	0
기타자산	64	61	영업외비용	0	0
자산총계	561	562	법인세차감전 이익	48	54
예수부채	1	3	당기순이익	35	39
기타부채	16	12			
부채총계	17	15			
자본금	300	300			
자본잉여금	0	0			
이익잉여금	244	248			
기타포괄손익 누계액	0	0			
자본총계	544	547			

정정전2)

(2009.3.17 현재 / 설정액 기준 / 단위:억원)

집합투자 기구종류	증권					부동산	특별 자산	혼합 자산	MMF	총계
	주식형	채권형	혼합형	파생 상품	재간접					
수탁고	3,504	13,198	4,313	27,681	9	0	0	0	3,623	52,328

정정후2)

(2009.11.10 현재 / 설정액 기준 / 단위:억원)

집합투자 기구종류	증권					부동산	특별 자산	혼합 자산	MMF	총계
	주식형	채권형	혼합형	파생 상품	재간접					
수탁고	3,094	17,221	1,590	21,263	10	0	0	0	1,276	44,454

[간이투자설명서]

-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신설
-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(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, 운용규모 등) 개정
- 작성기준일 변경(2009.11.10)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등 개정
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변경(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조항 삭제에 따른 개정)

구분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작성기준일 :	2009년 3월 31일	2009년 11월 10일
5.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	2009년 5월 3일	2009년 11월 20일
II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6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'	기준일 : 2009.03.31 현재 성명 : 김현중 / 생년 : 1967 / 직위 : 부장 /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: 101개 / 다른 운용자산규모: 10,009억	기준일 : 2009.11.10 현재 성명 : 김현중 / 생년 : 1967 / 직위 : 부장 /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: 92개 / 다른 운용자산규모: 3,552억
III. 매입, 환매관련 정보 中 '1. 수수료 및 보수', (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 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 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다.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	- Class A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: 가.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(변액보험을 포함한다) 나.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다. 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라.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마.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